

#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3년 10월 일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2003년 9월 20일 평창군의회로부터 이송되어 온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9조제3항 및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합니다.

## 이 유

1. 평창군은 정부의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에 의거 1998년 630명의 정원에서 부서별로 종합적인 업무분석과 조직진단을 거쳐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연차적(4년간)으로 129명을 제한적으로 감축하였고, 그동안 문화 예술회관, 진부도서관, 효석문화관 등 신규시설에 15명, 사회복지직 정원조정 및 확대배치 국가정책에 따라 7명, 정보화기능보강에 2명, 기타 동계올림픽 유치지원, 수해 항구복구, 구제역 방역, 민방위 경보요원 등 정부지침에 의한 7명 보강으로 총 31명이 증원되었으나 순증이 아닌 신규시설 관리와 국가정책에 따라 정원을 증원하여 현재 532명의 정원으로 구조조정 하였고, 연간 19억 6천만원의 인건비를 절약하여 지역개발에 투자하는 등 조직을 경영관리 차원에서 긴축 운영해 오고 있으며

업무처리도 불필요한 절차와 형식을 과감히 축소하고, 전결권 하향조정, 수리, 등록, 신고업무 등 기속행위에 대하여는 과감한 창구즉결처리 등 업무재설계를 통해 연간 15명의 인력을 절감하여 조직운영 효율성 증대에 최선을 다해 오고 있음.

정원책정 및 정원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8064호)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부서별로 면밀한 업무분석과 종합적인 조직진단을 거쳐 조직구성원의 이해와 공감속에 조직간 균형있는 정원책정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하여야 하나,

평창군의회에서는 정원관리 기관별로 종합적인 업무분석과 조직진단을 거치지 않고 구조조정으로 인해 감축된 2명이 보강되지 않아 의정활동에 차질을 빚는다는 포괄적 사유로 집행기관 정원 2명을 감축하여 의회사무과 정원 2명을 증원한 것은 조례개정의 목적과 성격에 벗어난 것으로써

정원책정은 해당 부서장의 소요제기에 의하여 조직관리 부서에서 종합적인 업무진단과 상호 토의를 거쳐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조직전체의 정원책정과의 형평성, 합리성, 적정성 등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한 후 인력배정 여부를 결정하여 오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배치는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용)하는 등 지방의회 의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단계별로 체계적인 상호 협의절차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근거로 해석할 수 있음에도

2003. 7. 25일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가 의회에 제출된 이후인 8월 초순경 정원증원을 구두 협의 요청하여 추후 검토키로 협의 하였음에도 2003. 9. 18일(제105회평창군의회(임시회)) 집행기관의 정원 2명을 감축하고 의회사무과 정원 2명을 증원 수정 의결한 것은

의회사무과의 업무진단과 인력분석이라는 정원책정의 필수적 사전절차 없이 이루어진 하자있는 수정의결로써 평창군 조직전체 인력의 합리적 배정과 충원을 어렵게 한 사안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원책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범위를 침해한 사항이라 판단됨.

2.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원의 감축을 의결할 경우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도모하여야 하나,

그동안 합리적인 조직진단을 거친 결과 불가피하게 증원해야 하는 집행기관의 정원 11명중 2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의견을 듣지 않고 정원을 대안없이 감축한 것은 집행기관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사항으로 같은 규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배정을 어렵게 하여 원활한 업무추진과 효율적인 정원관리 등 지방행정 조직관리 및 인력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됨.

3. 앞으로 의회사무과의 정원책정은 구조조정의 시행취지를 역행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종합적인 업무분석과 조직진단을 거친 후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실과소 및 읍면별 행정수요, 업무량 분석, 직렬·직급별 정원 배정의 적정성 분석 및 평가 등 별도의 조직진단을 거쳐 검토할 예정임.
4. 따라서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수정의결은 일반적으로 조례개정의 목적과 성격을 크게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침해와 사전 업무분석 및 조직 진단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하자있는 의결로써 수정의결의 사유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조직관리권(인사)에 관하여 소극적 사후적 개입이 아닌 적극적 개입으로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이 정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의 권한분리 및 배분의 취지에 배치되는 위법한 사안 이므로 본 수정의결은 마땅히 재심의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기에 재의를 요구하는 것임.

※ 참고자료

- 가.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 나. 관계법령발췌서 1부.

##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호외의 부분중 "532"를 "543"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523"을 "532"로 하며, 동조제2호중 "9"를 "11"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평창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u>532명</u> 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 <u>543명</u> 으로 -----.	제2조(정원의 총수) ----- ----- <u>543명</u> 으로 -----.
1. 집행기관의 정원 : <u>523명</u>  2. 의회사무과의 정원 : 9명	1. ----- : <u>534명</u>  2. (현행과 같음)	1. ----- : <u>532명</u>  2. ----- : <u>11명</u>

# 관 계 법령 발췌서

## □ 지방자치법

제19조 (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등) ①~② (생 략)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기간내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⑧ (생 략)

제98조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83조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①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②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제103조(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에 있어서 그 규모의 적 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③~⑤(생 략)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

제13조 (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등을 참작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참작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 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에 대하여는 동일계급내에서 행정직 및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해당분야의 직렬이 없어 일반직으로 충원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시험·연구·조사·교육·상담(사회복지분야의 상담업무를 제외한다) 등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의 직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1개의 직위에 전임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임계약직 공무원의 채용기간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2. 시·군·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사무과, 합의제행정기관, 직속 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 및 그 출장소

- 제15조 (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에 의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달 말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안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 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 또는 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기타 단체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시·도지사는 당해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정원의 규정) 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 한다)
2. 본청·소방학교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②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 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④(생략)

제24조 (기구 및 정원조례의 의결) ①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함에 있어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구의 축소나 통폐합, 정원의 감축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지방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된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용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대법원판례 (94. 4.26, 93누675)

[판례 6] 행정불만처리조정위원회 위원 일부의 위촉권을 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한 조례규정의 위법여부등(94. 4. 26, 93누675)

## <판결요지>

- 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관하여 소극적 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그것이 견제의 범위 안에 드는 경우에는 허용되나, 집행기관의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거나 동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행사할 수는 없으며,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조례안에 규정된 행정불만처리조정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촉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사후에 소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지방의회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권의 범위에 드는 적법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될 것이나, 그 일부를 지방의회의장이 위촉하도록 한 것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이 정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의 권한분리 및 배분의 취지에 배치되는 위법한 규정이며, 또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의장 개인의 자격으로는 관여할 수 있는 권리가 없고 조례로써 이를 허용할 수도 없으며, 따라서 의장 개인이 위원의 일부를 위촉하도록 한 조례안의 규정은 그 점에서도 위법하다.
- 나. 정부조직법 제3조, 행정기관의 조직과정원에 관한통칙 제18조,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제25조, 제26조, 제27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교육감은 도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고유적으로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인 집행기관으로서 교육, 학예에 관한 도의 사무 및 국가에서 위임한 교육, 학예에 관한 행정사무를 독자적으로 관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집행기관인 도지사가 위와 같은 교육감의 고유업무에 대한 행정불만처리사무까지 관장하도록 한 것은 위 법률 등에 규정된 교육감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 다. 조례안의 일부가 위법한 경우에는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전부 효력이 부인되어야 한다.(1994. 4. 26. 제1부 판결, 93추175 전라북도행정불만처리조례안무효확인)